고양시 공고 제 2020 - 1008 호

고양시 「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」

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주도의 일자리 안정 및 저소득 근로종사자 생활안정 위한 특별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0. 4. .

고 양 시 장

[1]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

1. (사업개요)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업이 전면(부분)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지원
   - ○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, 의심자 발생 사업장
   - ○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10%이상 매출 감소 사업장
   - ○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
2. (지원기간) 무급휴직일 기준 총 40일(약 2개월)
   - ○ '20.2.23. ~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(예산 소진 시 마감)
3. (지원대상) 300여명
   - ○ 고양시 소재 **고용보험이 가입된 50인 미만 제조업 및 영세사업장**의 무급휴직 대상자 지원 ※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지원
   - (근로자수 산정기준)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(1개월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

   ※ 지원자가 많을 경우
   - ❶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
   - ❷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공공·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후순위 결정
   - ❸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많은 신청자 우선
4. (지원금액)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1인 일 2.5만원,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
   - ○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.5만원
   - ○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(2.5만원×4시간)÷8시간 = 일 1.25만원

○ 1개월 소정시간 20일을 초과하였더라도 **월 최대 50만원 지급**

5. (사업장 지원요건)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"심각"단계이후 ('20.2.23.)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

○ 수 개의 사업장(본사+A사업장+B사업장+ ...)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,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(생산라인) 무급휴직도 가능

6. (근로자 지원요건)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"심각" 단계 이전('20.2.23.)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우선 지원

○ 다만, **고용보험 미가입자** 중 증거자료(통장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원 입증)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**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**

○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,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**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**(사업주확인필)

○ **근로자 소득요건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자**

[기준중위소득(100%) 건강보험료 수준]

가구원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	1,757,194	46,890	11,340	-
2인	2,991,980	100,050	85,837	100,076
3인	3,870,577	129,924	121,735	131,392
4인	4,749,174	160,516	160,865	162,883
5인	5,627,771	189,063	195,462	192,080
6인	6,506,368	220,167	233,499	224,298
7인	7,389,715	248,116	267,395	253,956

※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40일 분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C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 불가
다만,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20일분, C사업장에서 20일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

※ 고소득자(가구 월 8,752,000원 이상 또는 연소득 7,000만원 이상 제외)

7. (중복지원제외)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정부지원 받는 근로자는 중복지원 불가 (부정수급 적발시 5배 반환 조치)

<참고(제외사례):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가 시 수령지급>

대상	지원
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·격리자	유급휴가지원금(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) ↳ 개인별 일급기준(월 13만원 상한)
확진자,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	휴업수당 발생(근로기준법)
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작업량·매출·고객감소로 인한 사업장 휴업	고용유지지원금 지원 ↳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/4~2/3, 1일 상한액 6.6만원

○ **4월 지급예정인 경기도재난기본소득, 고양시위기극복수당의 경우,**

- 특별지원사업 1차 지급분(2. 23.~ 3.31 해당)의 경우 중복적용 대상에서 제외
- 단, 2차 지급분(4.1~4.30)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(10만원), 고양시위기극복수당(5만원)을 제외하고 지급

ex) 2차 지급분 : 경기도재난기본소득(10만원), 고양시 위기극복수당(5만원) 제외 지급
⇒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〔50만원-(10만원+5만원) = 35만원〕 지급

8. (제외 대상자 및 업종)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, 단란주점,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

※ 제외 대상자 및 업종의 근로자가 부정 수급할 경우 적발시 5배 반환 조치함

9. (추진절차)

① 모집 및 신청접수	② 심사 및 (부)지급결정	③ 지원금 지급
○ 공고일 : 4. 8. (수) ~ ○ 신청/접수 - 전자우편(이메일) , 팩스	⇨ ○요건확인: 접수와 병행실시 ○(부)지급결정 ‣ 1차) 2020. 4. 23. 한 ‣ 2차) 2020. 5. 14. 한	⇨ ○ 지급 ‣1차) 2020. 4. 28. 이내 ‣2차) 2020. 5. 20. 이내

10. (신청기간) 2020. 4. 8. (수) ~ 예산 소진 시까지

○ 신청자는 매달 1일~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비를 익월 10일까지 신청(월 단위 신청)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

- (1차) '20. 2. 23. ~ 3. 31. 해당 분은 **'20. 4. 20.까지 신청**
- (2차) '20. 4. 1. ~ 4. 30. 해당 분은 **'20. 5. 1. ~ '20. 5. 11. 신청**

11. (신청서류)

① 사업주일괄신청서(신청서식 1~2),

②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**근로자 개별 신청서**(신청서식 3~4)

③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**주민등본상 세대원 동의, 자필서명**)(신청서식 5)

④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확약서(**자필서명**) (신청서식 6)

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사업자 발급)

※ 다만,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증거자료(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)에 무급휴직 대상자 확인된 경우 가능

※ 4대보험 가입자 명부 : 4대보험 포털사이트(www.4insure.or.kr)에서 확인 가능

⑥ 근로자명의 통장사본

12. (신청방법) 전자우편(이메일), 팩스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0. 4. 8. 부터 ~ 예산 소진 시까지

○ **신청방법 : 기업지원과 전자우편(이메일), 팩스 접수**

- 전자우편(이메일) 접수 : gybiz@korea.kr
- 팩스(FAX) : 031-8075-4913 ※ FAX접수 후 기업지원과 통화 확인 필수

※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
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및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비대면 전자우편(이메일), 팩스로만 접수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3. (요건확인 및 지급결정)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(필요 시 보완 요청)

○ 신청서 접수 종료일 후 10일 이내 지급(부지급) 결정 및 지원금 지급

※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

14. (지원금 지급) 수행기관에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

*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

15. 신청문의 : 고양시 민원콜센터(031-909-9000),

기업지원과(031-8075-3575~3577)

※ 유의사항(부정수급)
○ 코로나19로 추진중인 사업 추진 중인 생계비 지원사업*의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개인이 서약한 확약서 대로(5배로 반환)처리 됨
○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본인 자필 서명

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

1. (사업개요)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"특고"라 함) 및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

2. (지원기간) 무급휴직일 기준 총 40일(약 2개월)
○ '20.2.23. ~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(예산 소진 시 마감)

3. (지원대상) 720여명 ※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인 경우에 한함
① 교육 관련: 학습지 방문강사, 교육연수기관 강사,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
② 여가 관련: 연극·영화 종사원,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
③ 운송 관련: 기타 자동차 운전원(대리운전원), 공항·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
④ 그 외 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운전원, 학습지교사,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, 방과후 교사 등 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
⑤ 복지부「긴급복지 생계지원」대상자 우선 적용

※ 지원자가 많을 경우
❶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
❷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공공·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후순위 결정
❸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많은 신청자 우선

4. (지원금액)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"심각" 단계('20.2.23.)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로 1인 일 2.5만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
○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시간(일)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, 노무제공 시간(일)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.5만원 지급
○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
○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 25만원, 15일 37.5만원, 20일 50만원

○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, **수익이 발생하지 않는** 특고·프리랜서에 대해서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

* 소득 25~50% 감소 → 10일(25만원), 50~75% 감소 → 15일(37.5만원), 75~100% 감소 → 20일(50만원) 지원

5. (지원요건)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, 위촉 서류, 소득증빙 서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·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

○ **근로자 소득요건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자**

[기준중위소득(100%) 건강보험료 수준]

가구원수	소득기준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	1,757,194	46,890	11,340	-
2인	2,991,980	100,050	85,837	100,076
3인	3,870,577	129,924	121,735	131,392
4인	4,749,174	160,516	160,865	162,883
5인	5,627,771	189,063	195,462	192,080
6인	6,506,368	220,167	233,499	224,298
7인	7,389,715	248,116	267,395	253,956

※ 고소득자(가구 월 8,752,000원 이상 또는 연소득 7,000만원 이상 제외)

6. (중복지원 제외) 타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대상자 중복 지원 금지

<참고(제외사례): 코로나19로 인한 휴업·휴가 시 수당지급>

대상	지원
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·격리자	유급휴가지원금(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) ↳ 개인별 일급기준(월 13만원 상한)
확진자,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	휴업수당 발생(근로기준법)
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작업량·매출·고객감소로 인한 사업장 휴업	고용유지지원금 지원 ↳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/4~2/3, 1일 상한액 6.6만원

○ 4월 지급예정인 경기도재난기본소득, 고양시위기극복수당의 경우,

- 특별지원사업 1차 지급분(2. 23.~ 3.31 해당)의 경우 중복적용 대상에서 제외

- 단, 2차 지급분(4.1~4.30)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(10만원), 고양시위기극복수당(5만원)을 제외하고 지급

ex) 2차 지급분 : 경기도재난기본소득(10만원), 고양시 위기극복수당(5만원) 제외 지급
⇒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〔50만원-(10만원+5만원) = 35만원〕 지급

7. (추진절차)

① 모집 및 신청접수	⇨	② 심사 및 지급자 (부)결정	⇨	③ 지원금 지급
○ 공고일 : 4. 8. (수) ~ ○ 신청/접수 - 전자우편(이메일) 활용		○요건확인: 접수(4.8.~22.)와 병행실시 ○(부)지급결정 ▸ 1차) 2020. 4. 23. 한 ▸ 2차) 2020. 5. 14. 한		○ 지급 : ▸1차) 2020. 4. 28. 이내 ▸2차) 2020. 5. 20. 이내

8. (신청기간) 2020. 4. 8. (수) ~ 예산 소진 시까지

○ 신청자는 매달 1일~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비를 익월 10일까지 신청(월 단위 신청)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

- (1차) '20. 2. 23. ~ 3. 31. 해당 분은 **'20. 4. 20.까지 신청**
- (2차) '20. 4. 1. ~ 4. 30. 해당 분은 **'20. 5. 1. ~ 5. 11.까지 신청**

9. (신청서류) ※ 붙임 신청서식 참고

❶특고·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(신청서식 1)

❷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(참고서식 2)

❸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**주민등본상 세대원 동의, 자필서명**)(참고서식 4)

❹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확약서(**자필서명**)(참고서식 5)

❺특고임을 입증할 서류(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 관련 서류)

❻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(학원, 문화센터,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)

❼본인명의 통장사본

10. (신청방법) 일자리정책과 전자우편(이메일), 팩스(FAX) 접수

○ 접수기간 : '20. 4. 8. (수) ~ 예산 소진 시까지

○ 신청방법 : 전자우편(이메일), 팩스

- 전자우편(이메일), 팩스(FAX) :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

▸ 13번 참조하여 주소지 동을 중심으로 해당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(13번 참조)

※ FAX접수 후 해당동 담당자 통화 확인 필수
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및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비대면 전자우편(이메일), 팩스로만 접수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1. (요건확인 및 지급결정)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(필요 시 보완 요청)

*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

12. (지원금 지급)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

*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,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등)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

13. 신청문의 및 전자우편(이메일) 제출처 : 고양시 민원콜센터(031-909-9000), 일자리정책과 동별 담당전화

동 별	문의처	팩스접수	전자우편(이메일)접수
주교동, 원신동, 행주동	031-8075-3701	031-8075-9441	2000yeon@korea.kr
흥도동, 성사2동	031-8075-3703	031-8075-9442	cs2000lee@korea.kr
성사1동, 화정2동	031-8075-3704	031-8075-9443	blext@korea.kr
효자동,삼송동,창릉동,대덕동	031-8075-3705	031-8075-9444	xlahdrn@korea.kr
능곡동, 화정1동	031-8075-3702	031-8075-9445	jhkimm@korea.kr
풍산동, 고봉동	031-8075-3465	031-8075-9446	cys03@korea.kr
식사동, 장항2동	031-8075-3466	031-8075-9447	giraffee2002@korea.kr
중산동, 마두2동	031-8075-3467	031-8075-9448	color83@korea.kr
주엽1,2동	031-8075-3710	031-8075-9449	smr7002@korea.kr
탄현동	031-8075-3712	031-8075-9450	percific@korea.kr
송산동	031-8075-3714	031-8075-9451	pms2018@korea.kr
일산2,3동	031-8075-3715	031-8075-9452	cjwss@korea.kr
마두1동,일산1동	031-8075-3717	031-8075-9453	chohj@korea.kr
대화동, 송포동	031-8075-3719	031-8075-9454	hjy124@korea.kr
관산동, 행신2동	031-8075-3661	031-8075-9455	y900039@korea.kr
고양동, 화전동	031-8075-3663	031-8075-9456	gab1021@korea.kr
행신1동, 행신3동, 장항1동	031-8075-3677	031-8075-9457	betterwork@korea.kr
백석1,2동, 정발산동	031-8075-3674	031-8075-9458	wiljhj@korea.kr